

청렴한 도시철도 모두가 웃는사회

2013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투명 청렴한 공기업 운영의 모범으로 인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6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8.53으로 **우리 공사는 1등급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이지역 지방공사 중 1위, 전국 지방공사 중 2위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지방공사 평균(7.88)보다 0.65점 높고, 전체기관 평균(7.86점)보다는 0.67점 높았습니다..

우리공사는 2010년부터 청렴도측정대상기관에 선정되어 매년 측정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청렴도 측정결과 2010년~2011년 2년 연속 우수기관(Ⅱ등급)에 선정되었으며, 그 결과 2012년에는 청렴도측정을 면제받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2011년 대비 종합청렴도가 12위에서 10단계나 뛰어 오른 2위를 기록하였으며 외부청렴도는 6위에서 4위로, 특히 내부청렴도는 34위에서 15위로 상향·개선 되었습니다.

【2013년 측정 개요】

- ◆2013년도 청렴도 측정 : 8월 ~ 11월
- ◆청렴도 산출방식
 - ▶ 종합청렴도=(외부청렴도×73.5%)+(내부청렴도×26.5%)
 - 외부청렴도 : 외부고객(ARS 설문조사)
 - 내부청렴도 : 내부직원(이메일·스마트폰 설문조사)

이번조사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외부고객의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는 외부청렴도와

조직구성원이 체감하는 내부청렴도를 합산해 측정하였으며, 각종계약 및 임대사업 등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청렴문화수준, 부패방지제도, 인사, 예산 등 내부 업무의 청렴수준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내·외부청렴도 개선주요항목】

구분		항목	
외부	부패지수	부패인식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내부	청렴문화	조직문화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패방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실효성
	업무청렴	인사업무	금품/향응 편의 제공 간접경험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지시 인식

올해 청렴도평가 결과는 청렴옴부즈만 운영, 부패영향평가 실시, 청탁등록시스템 구축, 징계양정기준 강화 등 공정한 시스템 운영과 청렴마일리지제도, 윤리의식 자가진단 등 임직원의 청렴 프로그램 확대 노력 등으로 좋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임직원 개개인의 청렴의식과 공사가 추진하는 다양한 반부패 청렴활동에 전사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없었다면 이 같은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2014년도에도 전 임직원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팀에서는 금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도시철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대해 알아보시다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부패의 유형 및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공공서비스 경험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부패발생 현황자료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에 취약한 분야를 객관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각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청렴도 측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부패인식도 조사,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등 다양한 부패진단 체계가 존재하였으나, 기존의 조사방식들은 정치분야, 사법분야, 행정분야와 같이 지나치게 거시적인 조사단위를 사용한 점과 인식 위주의 조사방식으로 인해 조사결과의 객관성이 부족한 점 등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청렴도 측정은 이러한 한계들을 보완하고자,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부패인식 뿐만 아니라 ‘부패경험’도 함께 측정하며, ‘기관 단위’의 체계적인 부패진단 시스템으로 측정한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한다.

임직원행동강령 주요개정사항

우리공사 특성을 반영한 행위기준 추가 신설, 구체화, 외부강의 대가기준 등을 반영하여 임직원행동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 알선 청탁의 이익범주를 부당한 이익에서 일체의 이익으로 확대(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
- ◆ 인사·청탁의 영향범주를 부당한 영향에서 일체의 영향으로 확대(안 제7조 제1항)
- ◆ 상위법령에서 보장하는 정당 및 후원회 가입에 대한 금지조문 삭제(안 제10조 제1항)
- ◆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및 부동산 무상대여 시 신고의무 추가(안 제19조 제2항)
- ◆ 외부강의·회의 대가기준 상한액 명시(안 제25조 제3항, 별표2)
- ◆ 공직자로서의 품위훼손행위 금지조문 신설(안 제29조의 2)

【신설조항】

【제29조의 2】(품위 훼손행위 등 금지) ① 임직원은 공직자로서의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매매,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 위반행위
2.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무단외출 등 직무태만행위
3.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다운로드 등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거나 남용하는 행위

【별표2】 외부강의·회의대가기준(상한액)

(단위: 천원)

구분	사장	본부장	직원	비고
1시간 이내	300	230	120	원고료·여비는
1시간 초과	200	120	100	미포함

외부강의 회의 등 신고

임직원행동강령 제25조,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지침에 의거 대가를 받고 출강하는 외부강의·회의 등은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신고의 판단기준 : 대가의 유무
- ◆ 신고 시 필요서류 : 신고서, 요청기관 공문
- ◆ 신고방법 : 감사팀으로 공문의뢰(필요서류 첨부)

2014년도 감사활동은?

- ◆ 설 연휴 복무점검 : 1월 ~ 2월
- ◆ 행락철 기강확립 복무점검 : 4월 중
- ◆ 자산관리실태 특별감사 : 5월 ~ 6월
- ◆ 상반기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 : 6월 중
- ◆ 하계휴가철 특별점검 : 7월 ~ 8월
- ◆ 추석명절 특별점검 : 9월 중
- ◆ 기술본부 소관 일반감사 : 10월 ~ 11월
- ◆ 하반기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 : 11월 중
- ◆ 연말연시 복무점검 : 12월 ~ '15.1월초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운영내규 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체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보호관련 운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내규』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 관련 인력·예산 등 반영(제3조)
- ◆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의 정기적 실시(제6조)
- ◆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제5조) 및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제8조)
- ◆ 공익신고 접수·처리절차(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등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23조부터 제28조) 등

청렴계약제 확대시행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처리에 대한 공사 자체 자정 노력 중 하나로 청렴계약제 작성대상 및 적용 계약범위를 확대하고자 기존의 청렴계약 각서를 업체뿐 아니라 내부 계약담당자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구분	청렴각서 대상			비고
	업체	발주부서	계약부서	
기존	○	-	-	1장/계약
변경	○	○ (내부용 각서에 동시 서명)		2장/계약

☞ 청렴계약서 제출 : 업체용 → 계약부서

발주·계약부서용 → 업체

- 대상 : 금액 30만원 이상 물품, 공사 용역 등 모든 계약
- 시행시기
 - 시범시행 : 2013. 11월 ~
 - 시행 : 2014. 2월 ~



마음에 새길 『목민심서』

제5장 이전육조(吏典六條) 中

속리지본 재어울기 기신정 불령이행 기신부정 수영불행
(東吏之本 在於律己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行)

아전을 단속하는 근본은

수령자신의 몸을 규율하는데 달렸다.

자신의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시행되지만

자기의 몸이 바르지 못하면

비록 명령하여도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부패행위 · 공익 신고의 차이?

공익신고는 민간·공공영역을 구분치 않고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과 관련한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공영역에서의 '공직자의 법령위반행위와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익 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180개 법률

부패행위 신고대상

-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 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대외적 반부패 · 청렴관련 동향

공직자 부패신고 · 공익신고도 스마트폰 접수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앱」 서비스

공직자가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폐기물 무단 배출 같은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한 경우 스마트폰으로 해당 동영상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앱 서비스가 시작됐다.

이번 「부패공익신고앱」 서비스 개통에 따라 신고가 훨씬 간편해지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진 만큼 정부의 복지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공직자의 뇌물수수, 건설폐기물 불법처리·대기오염 물질 유출과 같은 각종 부패·공익 침해 행위의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렴향상 수범사례 (소방방재청)

청렴향상 1부서 1과제 갖기 전개 ↔ 실천 민간위원참여

조직문화, 인사, 예산집행 및 업무지시의 공정성 등 분야에서 1부서 1과제를 선정, 14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청렴모니터위원이 부서별 청렴향상 과제의 실천과정을 참관하여 상호 의견교환을 한다. 부서별 과제로는 부패탈출(자기정화)의 날 운영, 정책현장 청렴 모니터링제 운영, 청렴지킴이 운영, 알선·청탁근절교육 및 주변홍보 등이 있으며, 전 직원이 참여하여 청렴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천함으로써 청렴도 필요성 인식제고와 관심을 유도하는데 기여하였다.

“한국 공공부문 청렴도 3년 연속 악화”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청렴도가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제투명성 기구(TI)의 각국 공공부문 청렴도 평가 지표인 부패인식지수(CPI)순위에서 우리나라는 3년 연속 하락했다. 이 지수는 공직사회와 정치권 등 공공부문에 부패가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도를 평가한 지표이다.

한국투명성기구는

- ▲ 독립적 반(反)부패 국가 기관 복원
-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과 검찰 개혁
- ▲ 내부고발자 보호 범위 확대
- ▲ 청렴교육의 강화
- ▲ 공공기업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복원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 부패신고안내 ☆

나의 상담과 신고로 일터가 건강해집니다.

홈페이지 및 전자문서시스템 내에 행동강령 상담, 부패·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분야에 대한 궁금증 및 신고사항 발생 시 적극 참여 바랍니다. 신고인의 신분보장 및 비밀유지는 공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 반드시 감사부서의 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신고·상담시스템

- ① 홈페이지 (www.gwangjusunway.co.kr)
→ 부패·공익신고센터
- ② 전자문서시스템 → 게시판 → 청렴마당
→ 윤리·감사상담실, 청탁등록센터
- ③ 본사(4층), 용산·옥동기지(종합관리동 1층)
→ 우편신문고